

## 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7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다. 상 정 일 자 : 1998. 10. 27(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양곡관리법 개정('94. 1. 5)에 따라 현행조례의 세부시행 사항이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규정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종전의 규모이하 제분업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4. 1. 5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규모이하 제분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88. 5. 1일 제정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